의안번호	2206734
의 뢰 인	이원택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31.
추계번호	24A6090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)	○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(이하 “전력망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전력망위원회 구성・운영)	○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・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・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됨(제5항)	의무규정
3	안 제22조(국가 등의 지원)	○ 국가는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,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조(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)	○ 미대상: 유사사례인 「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[1]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등[2]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7조(전력망위원회 구성・운영)	
3	안 제22조(국가 등의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송・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) ① 송・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
2.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송・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
2. 상세 사유

❑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국가기간 전력망[3]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안 제22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,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❑ 다만,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 등이 확정적이지 않으며,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
○ 참고로, 제정안 관련 주요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현황을 보면,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65kV의 경우 선로길이는 551,849m, 변전소 수는 8개이며, 345kV의 경우 선로길이는 4,492,779m, 변전소 수는 117개임

---

3. 제9조제3항에 따른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
4.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'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'는 연평균 3회 개최되고 있으며,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원/연 정도 소요됨

3) 안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국가기간 전력망 설비"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·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·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.

가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(이하 "재생에너지"라고 한다)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·변전설비

나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·변전설비

다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·변전설비

[표 1] 주요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현황(2023년 12월 31일 기준)

구 분			765kV	345kV
주요 송전설비	선로길이(m)	가 공	551,849	4,492,779
		지 중	—	195,907
		수 중	—	—
	회선길이(c-m)	가 공	1,023,770	9,503,597
		지 중	—	490,279
		수 중	—	—
주요 변전설비	변전소 수(개)	—	8	117
	변압기 용량(kVA)	—	46,110,000	146,470,000

자료: 한국전력공사, 『한국전력통계(제93호 2023년)』, 2024. 5.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